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민석 의원 발의)

| | |
|----------|-----|
| 의안 번호 | 410 |
|----------|-----|

발 의 년 월 일: 2022년 10월 19일
발 의 자: 이민석 의원(1명)
찬 성 자: 강동길, 김태수, 민병주,
박 석, 박승진, 유정인,
이봉준, 임종국, 최재란,
최진혁 의원(10명)

1. 제안이유

- 반지하, 빈집 등 노후·불량건축물이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 지역에서는 제외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에 반지하, 재난안전시설물, 빈집 등이 포함된 사업시행 구역을 포함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에 반지하, 재난안전시설물, 빈집 등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노후·불량건축물이 있는 경우를 포함함(안 제3조제1항 및 안 제49조제1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 다. 기타 : 신 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지하층이 있는 주택을 포함한 사업시행구역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의 D, E등급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포함한 사업시행구역
6. 영 제8조의2의 3, 4등급에 해당하는 빈집을 포함한 사업시행구역

제49조제1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지하층이 있는 주택을 포함한 사업시행구역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의 D, E등급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포함한 사업시행구역
6. 영 제8조의2의 3, 4등급에 해당하는 빈집을 포함한 사업시행구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3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대 상범위 등) ① 영 제3조제1항제 1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3. (생 략)</p> <p><u><신 설></u></p> <p><u><신 설></u></p> <p><u><신 설></u></p> <p>② ~ ⑦ (생 략)</p> <p>제49조(건축규제의 완화) ① 법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 는 경우”란 다음과 같다.</p> <p>1. ~ 3. (생 략)</p> <p><u><신 설></u></p> <p><u><신 설></u></p> | <p>제3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대 상범위 등) ①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지하층이 있는 주택을 포함 한 사업시행구역</u></p> <p>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의 D, E등 급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포함 한 사업시행구역</p> <p>6. 영 제8조의2의 3, 4등급에 해 당하는 빈집을 포함한 사업시 행구역</p> <p>② ~ ⑦ (현행과 같음)</p> <p>제49조(건축규제의 완화) ①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지하층이 있는 주택을 포함 한 사업시행구역</u></p> <p>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의 D, E등</p> |

| | |
|--|--|
| <p><u><신 설></u></p> <p>② ~ ④ (생 략)</p> | <p><u>급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포함 한 사업시행구역</u></p> <p><u>6. 영 제8조의2의 3, 4등급에 해 당하는 빈집을 포함한 사업시 행구역</u></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
|--|--|

문서번호

2022101800000004

미첨부 사유서 (2호)

요청인 : 이민석 의원

담당 : 조도형 과장
이정수 팀장
류동균 주무관

접수일 : 2020.10.18.

회신일 : 2020.10.20.

내용문의 : 02-2180-7952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목 차

1. 비용발생 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3. 미첨부 사유
4. 작성자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Seoul Metropolitan Council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3조1항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대상범위에 제4호 지하층이 있는 주택을 포함한 사업시행구역, 제5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의 D, E등급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포함한 사업시행구역, 제6호 영 제8조의2의 3, 4등급에 해당하는 빈집을 포함한 사업시행구역 등을 신설하고, 제49조제1항에도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동조항을 신설하여, 서울시 예산 지출의 증가가 예상되나, 합리적 추산은 어려움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제3조제1항제2호)

-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법령 및 조례에서 대상지를 명확하게 정하고 있어 반지하주택에 대한 배려가 미약한 상황으로, 조례안 제3조1항1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 2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중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 및 3호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주택성능 개선지원구역외에 조례안 제3조1항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대상범위에 제4호 지하층이 있는 주택을 포함한 사업시행구역, 제5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의 D, E등급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포함한 사업시행구역, 제6호 영 제8조의2의 3, 4등급에 해당하는 빈집을 포함한 사업시행구역 등을 신설하고, 건축규제의 완화 대상사업에도 제49조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동조항을 신설하여, 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관련 예산 지출의 증가가 예상되나, 객관적 추산은 어려움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도형

예산분석팀장 이정수

분석관(주무관) 류동균

☎ 02-2180-7952

e-mail : rooster72@seoul.go.kr